

N · E · W · S · P · L · A · Z · A

해외 경쟁정책 동향

본협회 조사부

미국

**쇼와덴코(昭和電工)사의
미국 자회사,
반트러스트법 위반에 대해
2,900만 달러 지불에 합의**

미국 법무부는 지난 2월 23일, 대형 종합화학회사인 쇼와덴코사의 미국 자회사인 쇼와덴코 카본사(Showa Denko Carbon, 본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Ridgeville에 소재)가 반트러스트법 위반에 대하여 유죄임을 시인하고 벌금으로 2,900만 달러(약 37억 엔)를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벌금액은 미국 반트러스트법 위반 역사상 네 번째의 고액으로, 일본 기업에 대하여서는 역대 최고가 된다.

지금까지의 일본기업에 대한 벌금 최고액은 1996년에 가축사료 첨가제인 라이신을 둘러싼 국

제 가격카르텔을 이유로 아지노모토사와 교와하코(協和發酵) 공업사에 각각 부과된 1,000만 달러였다.

필라델피아 미국 지방법원에 제출된 법무부의 소장에 따르면 쇼와덴코 카본사는 1993년부터 1997년 1월에 걸쳐 흑연 전극의 생산·판매에서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다른 회사들과 공모하여 미국 국내·외에서의 가격고정 및 인플레이션을 이상의 가격인상과 시장점유율의 할당을 행함으로써 미국 흑연전극 시장에서 경쟁을 “억압 및 제거”하여 흑연전극을 사용하는 제철회사 등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되어 있다. 미국 흑연전극 시장은 1996년에 약 5억 달러 규모였다.

또 다른 전극 제조업체인 피츠버그의 Carbide / Graphite Group은 이미 반트러스트국의 법인 처벌감면 프로그램의 적용을 신청하여 동 사건에서 사면된 상태이다. 쇼와덴코 카본

사 또한 법무부의 조사에 상당히 협조함으로써, 법무부는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고 7,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동 행위에 대하여 2,900만 달러에 합의한 것이라고 의명을 요구한 법무부의 한 관리는 밝혔다.

흑연전극은 강철을 생산하는 미니밀(전기로의 일종, mini-mill)의 전압을 상승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미니밀은 제철산업에서 비중이 높아 가고 있으며 현재 미국 철강 생산의 3분의 1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

“본 사건은 법무부가 미국 제철산업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원료의 가격을 인상한 국제적 카르텔에 대한 기소 및 해체하기 위한 최초의 단계이다”라고 Janet Reno 법무장관은 말하였다. “제철산업은 자유롭고 개방된 경쟁의 이익을 거부당하여서는 안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무부는 당해 사건은 흑연전극 산업 및 기타 국제 시장에

에 대한 일련의 새로운 조사의 시작이라고 경고하였다. “수개 월 내에 우리는 이 산업 및 기타 국제적 산업에서 더 많은 기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 고위 관리는 말하였다.

작년에 커넥티컷 주의 흑연 전극 제조업체인 UCAR International사와 독일 회사의 자회사로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소재한 SGL Carbon사는 법무부가 자신들의 영업소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행하였다고 하였다.

법인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최고 1,0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나, 이 금액은 공모자들의 이익의 두배 내지 피해자들의 손해의 두배까지 증액될 수 있다.

■ '98. 2. 24, 오미우리 신문
& '98. 2. 24, Los Angeles Times
& '98. 2. 24, Financial Times

미 법무부, 공항 독점화 가능성에 관하여 항공사 조사 확대

항공요금이 최고치를 경신하며 인상되는 가운데 미국 연방 반트러스트 규제당국은 4대 미국 항공사들이 미국 내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공항들을 독점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달 초 법무부는 4대 미국 항공사들이 공항 이용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6개의 중추 공항에서의 약탈적 가격인하 및 기타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찾기 위하여 4개 소형 항공사에 민사소환장을 송부하였다. 법무부는 또한 뉴욕시 리과르디아 공항에서의 대·소형 항공사간의 치열한 경쟁 행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새로운 문서 제출 요구는 정부 조사가 상당히 확대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인데, 이 조사는 작년에 4개 항공사—노스웨스트 항공, AMR Corp.의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 및 UAL Corp.의 유나이티드 항공—에 소환장을 송달함으로써 개시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상업 항공에 대한 규제가 20년 전 철폐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서 당해 산업의 소규모 항공사와 승객들에게 미국 정부가 주요 공항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보장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민사조사요구서라고 알려진 당해 소환장은 대형 항공사들이 일정 시장에의 소형 항공사들의 진입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문서로 밝히도록 이들 소형 항공사들에 요구하고

있다. 소형 항공사들은 또한 1995년 1월 이후 약탈적 가격 설정 및 기타 영업전략으로 인해 포기하였던 노선과 감히 취항하지 못했던 노선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다.

법무부 대변인은 법무부가 “주요 공항에서의 항공사간의 약탈적 내지 배제적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확인하였으나 자세한 것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교통부는 2주 내에 항공사의 공정한 경쟁행위와 불공정행위를 정의하는 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교통부 관리들은 시장을 지배하려는 대형 항공사들의 욕구를 자체시키기 위해 강력한 설득에 의존하여 왔었으나 그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대형 항공사들은 자신들이 다른 항공사 수준에 맞추어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를 증대하는 것은 단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민사조사요구서—2월 5일자—에서는 법무부가 시카고, 달러스, 덴버, 디트로이트, 미니애폴리스, 애틀랜타 및 뉴욕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노선의 “독점화” 및 “독점화 기도”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소환장은 1995년부터의 가격설정, 항공노선, 여행자

마일리지, 이윤 및 사업확장 계획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소환장은 또한 마케팅 계획, 항공기 임차 내지 구입 계획, 공항 텁승구 이용료에 대한 상세한 자료와 경쟁항공사가 지배하고 있는 노선에 취항할 때 드는 비용의 규모를 밝히도록 요청하고 있다.

법무부는 1997년 2월 덴버에 소재한 Frontier Airlines의 이의신청에 따라 유나이티드 항공에 소환장을 송달함으로써 당해 조사를 개시하였다. 이의신청이 쇄도하면서 반트러스트 규제당국은 당해 조사대상에 3개 대형 항공사를 더 추가하였다. 시난 달 초에 Frontier, Reno Air, AirTran 및 Spirit Airlines에 새로운 소환장이 송부되었다. 미조리 주 캔사스시티에 소재한 Vanguard Airlines는 작년 11월에 법무부로부터 조사계획을 설명받았다. 반트러스트 법률가들은 대형 항공사들이 주요 공항으로부터 디수의 주요 도시에로의 수익성 높은 노선에 대한 자신들의 거점을 영속화하려는 노력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덴버 공항에서 가용 승객 좌석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스웨스

트 항공은 미니애폴리스 공항 승객 좌석의 82%를,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은 합쳐서 시카고의 오헤어 국제공항 승객 좌석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미네소타 주 세인트폴에 소재한 노스웨스트 항공만큼 미국 정부의 엄중한 조사를 받고 있는 항공사는 없다. 미니애폴리스를 지배하는 외에 동 항공사는 디트로이트에서 운송능력의 79%를 지배하고 있다. Little Spirit Airlines는 대형 항공사들의 공격적인 경영전략으로 인하여 동 항공사는 보스턴과 필라델피아에로의 취항을 포기해야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Spirit사의 직원들은 노스웨스트 항공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자세히 밝히거나 송달 받은 민사조사요구서에 대해 언급하기를 거부했다.

비즈니스급 항공요금은 지난 3년간 기록적인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며, 가장 큰 폭의 인상은 작년에 이루어졌다. 항공사들은 미국 경제의 호황으로 인한 여행객의 증가를 맞이하였다. 항공사의 좌석예약 컴퓨터는 저렴한 잔여 좌석을 판매하면서도 높은 운임의 비즈니스 여행자들을 위한 좌석은 남겨 놓는 등 더욱 정교해졌다.

아메리칸 항공의 대변인은 동 항공사는 법무부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것 외에 논평할 것이 없다고 하고 있다. 텔타 항공의 대변인은 동 항공사는 작년에 송달받은 소환장의 내용을 이행하였다고 하였다.

노스웨스트 항공의 워싱턴 지점장인 Elliot Seiden은 동 항공사가 반경쟁적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밖은 혐한 세상이다. 우리는 고객 유치를 위해 경쟁할 권리는 있다고 믿는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시카고에 소재한 유나이티드 항공의 대변인인 Joseph Hopkins는 “우리는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 우리는 경쟁력을 갖기 위해 가격을 낮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 98. 2. 26, The Wall Street Journal

미 반트러스트 집행당국, 역외 카르텔에 대한 공격 강화

미국 반트러스트 집행당국은 국제 카르텔 공격의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최근 몇 주 동안 기록적인 벌금 부과를 이끌어내었다.

점차 세계화되어 가는 경제에서 미국 반트러스트 집행당국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을 희

생시키는 국제 카르텔에 새로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법무부 차관보인 Gary Spratling은 언급하였다. “우리가 대규모 상업이 관련된 이들 카르텔을 공격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영향을 받는 미국 소비자의 수는 늘고 그 피해도 커지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반트러스트법의 국제적 집행 노력의 결과 작년 10월 1일 이후 형사벌금으로 1억 3,000만 달러가 징수되었다. 이런 추세로라면 올 회계년도에 반트러스트국에 의해 부과되는 벌금액의 규모는 1년 전 징수되었던 기록적인 2억 500만 달러를 넘어서설 것이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Spratling은 말하였다.

이번 주에 미국 반트러스트 관리들은 가격고정 계획에 관여한 두 일본 회사로부터 유죄의 인정 및 벌금 부과를 이끌어내었다. 지난 2월 25일, 후지사와 제약회사(Fujisawa Pharmaceutical Co.)는 글루콘산나트륨으로 불리는 산업용 세정제의 가격을 고정하고 동 제품의 전세계 시장을 할당하려는 카르텔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2,000만 달러의 벌금 지불에 동의하였다. 지난 2월 23일에는 쇼와

덴코사의 미국 자회사인 쇼와덴코 카본사가 이와 유사한 기소내용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2,900만 달러의 벌금 지불에 동의하였다. 동 회사는 제철업체들이 사용하는 흑연전극을 제조하고 있다.

이들 두 회사는 당해 두 산업에 관한 법무부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

후지사와 쇼와덴코사에 대한 기소는 미국 반트러스트 관리들이 외국 회사들에 대하여 점차 주목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작년에 기업 관련 반트러스트 사건의 32%는 외국 소재 회사에 대한 것이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998회계년도의 처음 5개월 동안 외국에 소재한 기업 피고들이 제소사건의 48%를 차지하였다. 이는 1991년의 1%와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1987년부터 1990년까지 반트러스트국은 외국기업에 대하여는 소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한편 25개 이상의 대배심단이 국제 카르텔의 의혹을 받는 활동에 대해 심리하고 있다고 관리들은 말하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은 파리 회의에서 미국 반트러스트 집행노력에 대하여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미국에서 새로이 구성된 국제 경쟁정책 자문위원회에는 무역 및 반트러스트 부문 관료 역임자 및 Merck & Co., 제록스사 및 Lazard Freres & Co.와 같은 회사들의 최고 임원도 포함되고 있다.

법무부는 카르텔을 저지하기 위한 또다른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반트러스트국장인 Joel Klein은 벌금의 상한액을 1,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인상하여 줄 것을 의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특히 큰 피해를 입었다든가 관련 회사들이 위법 행위로 인하여 큰 이익을 얻었음을 정부가 증명한다면 벌금액은 상한액인 1,000만 달러 이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한액으로 인해 그 이상의 벌금 부과 문제의 협상시에 정부는 “심각하게 불리한 상태”에 빠진다고 Spratling은 말하였다.

상한액 인상은 또한 정부로 하여금 치별이 소규모 회사와 대기업간에 비교적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줄 것이다. 몇몇 대기업은 1,000만 달러의 벌금을 단지 사업비용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

■ '98. 2. 27, The Wall Street Journal

미 FTC, 2건의 의약품 도매 업체간 기업결합 저지에 나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3월 3일 표결을 통해, 2개 도매업체가 미국 의약품 도매업의 상당부분을 지배하는 결과를 가져올 의약품 유통업에서의 2건의 기업결합을 저지하기로 하였다.

동 위원회는 위원회 내 법률가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기업결합 인가를 반대하면서 당해 기업결합이 허용될 경우 처방 의약품 도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상당히 감소시키고 소비자 가격의 인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다.

“의약품을 도매로 구입하는 여러 회사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바, 당해 기업결합이 성사되면 의약품의 구매처는 동기업들 외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FTC 경쟁국장인 William Baer는 밝혔다. “만일 결합한 회사들이 의약품 가격을 인상하여 소비자들이 단 1%라도 가격인상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이는 문제일 것이다.”

위원들은 제약회사들이 대부분 소규모 약국과의 직접 거래를 거절하며 의약품의 소량판매를 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도매업체들은 24시간 긴급

공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위원들은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면 사용빈도가 낮은 약품의 긴급 공급과 같은 중요한 보건서비스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였다고 하였다.

그 결과, FTC는 작년 8월 25일 발표된 오하이오 주 더블린에 소재한 Cardinal Health Inc. 가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에 소재한 Bergen Bruns-wig Corp.를 28억 달러로 취득하여 Cardinal Bergen Health 사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려는 계획과 작년 9월 23일 발표된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McKesson Corp. 가 펜실베니아 주 멜번에 소재

한 AmeriSource Health Corp.를 23억 달러로 취득하려는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이 사건들을 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동 위원회는 다음주 초에 미국 워싱턴 D. C. 지방법원에 당해 기업결합 중지를 위한 예비적 금지명령을 청구하고 행정판사가 당해 문제를 심리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동

위원회의 예비적 금지명령 청구에 관한 심리가 개시되기까지에는 6주가 걸릴 수 있으며, 금지명령이 발해질 경우 행정판사가 이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기까지 또다시 6개월 내지 1년이 걸

린다고 FTC의 선임법률고문인 Richard Parker는 밝혔다. Bergen사는 미국 제2위의 의약품 도매업체이며 Cardinal사는 제3위, McKesson사는 제1위, AmeriSource사는 제4위이다. 이러한 계획의 성공은 사실 월스트리트 및 당해 산업 내에서는 회의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 계획에 당해 산업의 최대 기업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동 위원회는 이 기업결합들이 성사되는 경우 동 2개 대형 기업은 도매업체들이 판매하는 처방의약품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기업집중의 극단적 경우라고 본다”고 Parker는 말하였다. 그는 생사가 걸린 문제인 의약품의 적시공급차질에 대해 동 위원회가 특별히 우려하고는 있지만, 두 회사가 이 사건에서처럼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게 되는 기업결합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저지되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관련 4개 회사가 당해 결정을 법원에서 디틀 것인지 아니면 이에 승복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Bergen Bruns-wig사의 대변인은 3월 3일 동 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논의를

위해 이사회가 소집되었다고 하였다. Cardinal사 및 AmeriSource사의 대변인은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McKesson사의 대변인은 논평을 구한 전화에 회답을 주지 않았다. 분석가들은 소송이 개시되면 각 회사는 적어도 500~1,000만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며 소송은 수년을 끌 수도 있다고 추정하였다.

“FTC의 결정은 크게 놀랄 만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법원에서 싸우는 데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내 생각은 결국 이 회사들이 기업결합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리라는 것이다.”라고 Salomon Smith Barney사의 보건산업 부문 분석가인 Lawrence Marsh는 언급했다.

의약품 소매업체들은 당해 기업결합 계획을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주요 고객인 소규모 약국 소유자들은 의약품 도매업체의 수가 1980년의 130개에서 1996년 50개로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적 기업결합이 있을 경우 가격이 인상될 것을 우려하여 이 두 건의 기업결합에 강하게 반대하였다.

“물론 한 쪽의 주장은 두 업체가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쪽의 주장은 기업결합이 이미 보편적 현실이라는 것이다.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이윤은 매우 낮으며, 따라서 이들은 더욱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Drug Store News라는 업계 잡지의 편집대표인 Marie Griffin은 말하였다.

FTC 위원 중 한 명인 Orson Swindle이 기업결합 인가에 찬성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Mary Azcuenaga 위원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 '98. 3. 4, Los Angeles Times & '98. 3. 4, New York Times

E U

**독일연방대법원,
독일축구협회의 TV방송권
독점에 대하여 경쟁제한
금지법 위반 판결**

지난 1997년 12월 12일자 독일 각 신문은 독일연방대법원이 독일축구협회의 TV방송권 독점에 대하여 경쟁제한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판결을 내린 내용을 보도했다. 동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독일 연방대법원은 지난 1997년 12월 11일, UEFA 컵(유럽 각국 연맹의 상위 축구 그룹 팀에 의한 우승배 생활전) 및 유럽 컵에 참가하는 독일대표팀의 홈 게임에 대한 TV방송권을 독일 축구협회가 독점하고 있는 것은 경쟁제한금지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2. 독일축구협회는 1992/93년의 시즌부터 1997/98년의 시즌까지 동 시즌의 축구경기에 대한 TV방송권을 매년 약 6,000만 마르크에 ISPR 및 UFA라는 두 개의 기업에 승인하여 왔다. 동 수입 가운데 10%는 유럽 축구연맹에 지불하고 나머지는 매년 결정되는 배분 비율에 따라 독일대표팀과 다른 「분데스리가」 참가팀에게 배분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연방카르텔청은 경쟁제한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금지 결정을 내렸고, 연방대법원도 이것을 지지하였다.

3. 위원회는 TV방송권의 독점을 규정한 독일축구협회 및 유럽축구연맹의 정관에 관하여 “홈게임”을 주최한 각 그룹 팀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카르텔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며, 이

러한 카르텔에 의한 경쟁의 제한은 가격인상의 효과를 가져와 최종적으로는 TV광고료나 수신료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4. 그러나 독일축구협회 측은 TV방영권의 독점적 공급은 높은 가격과 연계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정기반이 튼튼한 그룹 팀과 그렇지 않은 팀간의 재정조정이라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축구협회는 EU위원회에 카르텔금지의 면제를 인정받고자 하지만 그 가능성은 적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위한 절차에는 적어도 1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5. 이번 판결에 의한 연방카르텔청의 카르텔금지결정은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지만 연방카르텔청의 스토크만 부장관은 이번 시즌이 종료할 때 까지 기존의 계약을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6. 이번의 판결이 축구의 「분데스리가」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분명하지 않다. 또한 독일 국내의 축구경기에서의 방영권도 독일축구협회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연방카르텔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소송의 결과 점차로 「분데스리가」가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점에 관하여 독일축구협회측은 「분데스리가의 쇠퇴」를 피하기 위해서도 스포츠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경쟁제한금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97. 12. 12. 독일 신문

프랑크푸르트 및 뒤셀도르프 - 독일 양 공항에서 지상 하역서비스에 관한 구주위원회의 결정

지난 1월 14일 구주위원회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하역서비스의 독점을 철폐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결정을 하고, 뒤셀도르프 공항에서의 지상하역서비스 자유화명령의 적용면제를 인정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1.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지상 하역서비스에 관한 결정

제1의 결정은 EC조약 제86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의한 것으로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지상하역서비스(기내적재하물의 처리, 활주로 관리, 연료 보급, 화물·우편물의

처리, 청소, 기내음식물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항공회사 자체 또는 제삼자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에어 프랑스(Air-France), KLM 및 영국항공이 구주위원회의 심사 청구와 관련된 것이다.

구주위원회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동 공항에서 지상하역서비스를 개방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구주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러한 독점은 공항면적과 실비의 제약 때문이라는 프랑크푸르트 공항 측의 주장은 용인되지 않았다.

제2의 결정은 지상하역서비스의 자유화명령에 관한 것이다. 동 명령은 년간 항공이용횟수 100만명 이상 또는 취급화물량 2만5천톤 규모 이상의 공항에서의 지상하역서비스는 자유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동 명령은 자유화의 일정에 관해서도 정해져있지만, 공항면적, 시설의 제약에 의한 자유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시적인 적용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관해서 독일공항당국은 2000년 말까지 동 공항의 독점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주위원회는 대규모로 시설개선이 요구되는 제1터미널에서의 부분적

적용면제만을 승인하였다.

본건 결정에 따라 프랑크푸르트 공항 제2터미널에서는 공항회사 자체에 의한 하역서비스의 실시를 즉시 이행하고 또한 제3자에 의한 하역사업자의 참여를 1999년 1월 1일까지 허용할 것을 명령하였다.

2. 뒤셀도르프 공항에서의 지상 하역서비스에 관한 결정

전기 자유화명령에 따르면, 동 공항에서는 항공회사 자체에 의한 하역서비스를 1998년 1월 1일부터, 또한 공항관리자 이외의 사업자에 의한 서비스를 1999년 1월 1일부터 허용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1996년에 동 공항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공항시설의 제약 때문에 구주위원회는 1999년 말 까지 지상하역서비스의 개방의무를 유예하였다.

■'98. 1. 14. 구주위원회 발표

유럽위원회, 헐리웃 영화사들의 공동 배급회사 해체 결정

유럽위원회의 예비적 결정으로 헐리웃 대형 영화사 중 3개사가 유럽 연합에서의 영화를 공동 배급하기 위해 세운 회사인 United International Pictures(이하 "UIP사"라 함)는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

EU의 경쟁정책 담당위원인 Karel Van Miert는 2월 5일 3개 영화사—Viacom 그룹 소유의 파라마운트사, 씨그램사 소유의 유니버설사, 그리고 MGM / UA사—에게 이들은 유럽에서 자신들의 영화를 각자 배급하여야 한다고 통지하였다고 밝혔다.

UIP사의 배급 시스템은 영화 배급을 둘러싼 유럽과 미국간의 분쟁의 핵심이었다. UIP사의 폐지로 대형 업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기타 배급업자들의 시장점유율 확보가 쉬워져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유럽 영화 시장에 극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들 UIP사의 파트너 3개사는 Tomorrow Never Dies 및 Lost World와 같은 일련의 대형 흥행작품들을 출시하여 왔다. 프랑스 국민은 특히 UIP사 설립 합의에 반대하여 왔는데, 이는 유럽 영화의 제작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UIP사의 부사장이자 상담역인 Brian Reilly는 당해 합작투자사업에 대하여 제한적 내지 배타적 협정을 위법시하고 있다. EU경쟁법의 적용에서 더이상 제외되지 않는다는 당해 결정에 대하여 다툴 것이라고 하였다.

UIP사의 기원은 파라마운트사와 유니버설사가 자신들의 영화를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 배

급하기 위하여 CIC사를 설립한 197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3년 후, CIC사는 라이센스에 따라 MGM / UA사의 영화를 배급하기 시작하였고 1981년 MGM / UA사가 주식 참여를 통한 파트너가 된 후 UIP사로 개명되었다. UIP사는 1989년에 처음 EU 경쟁법의 적용제외를 받았고 1993년에 당해 적용제외의 개신을 청구하였다.

"우리는 집단적 판매라는 이전 체계의 계속을 허용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라고 Van Miert는 말하였다.

UIP사는 2개월 내에 당해 예비적 결정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항소할 수 있다. 유럽위원회의 최종적 결정의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Reilly는 UIP사가 최초에 경쟁법 적용면제를 얻었던 근거—공동으로 영화를 배급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비용을 감축하고 영화 제작에 투자하기 위한 더욱 큰 수입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이러한 논거를 예전에 받아들였으며 이 논거는 오늘날도 유효하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그러나 Van Miert는 동 위원회의 관리들은 자신의 예비적 결정을 지지할 “충분하고 확고한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하였다.

다른 미국 영화사들은 이미 독립적인 국제 배급 사업회사를 설립하였다. 타임 워너 그룹의 일부인 워너 브러더스사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News Corporation의 20세기 폭스사와 월트 디즈니사도 그러하다.

유럽 영화 제작업체들은 현재 영화 배급 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네덜란드 오락 사업 그룹인 폴리그램사는 시장규모가 큰 유럽 국가들, 특히 영국, 프랑스 및 독일에서 오락 사업 자회사 및 배급 사업부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난 7년간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였다.

■'98. 2. 6, Financial Times

유럽위원회, MCI-WorldCom 기업결합 조사 연장

유럽위원회 반트러스트 당국은 3월 4일 미국 통신회사인 WorldCom이 미국 제2위의 장거리 전화회사인 MCI를 370억 달러(220억 파운드)로 취득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조사 기간을 4개월간 연장함으로써 동 기업결합이 경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에서 이를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높아 이것이 시장지배적 지위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인하여 조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비록 어느 기업도 EU 내에 소재하고 있지 않지만, 이 기업 결합은 15개 국가들로 이루어 진 블록 내의 기업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유럽위원회로부터의 인가가 필요하다. 두 기업 모두 EU 반트러스트 조사가 개시되는 수준인 2억 5,000만 Ecu(1억 6,600만 파운드) 이상의 유럽에서의 연간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Van Miert는 당해 기업결합 제안에 대하여 경쟁업체들로부터 몇 건의 이의제기를 받았다고 하였는데, 그는 당해 기업 결합을 조사하고 있는 미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할 것이며 미국이 조사의 주도권을 잡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동 위원회 관리들은 MCI-WorldCom 기업결합에 따른 우려에 대하여 자세히 밝히지 않았으며, 당해 기업결합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들이 정보를 전송하는 기간 네트워크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만을 언급하였다. WorldCom은 특히 이 영

역에서 강력하며 MCI와 결합할 경우 당해 통신량 시장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한 관리는 말하였다.

MCI 인수 경쟁에서 WorldCom에 패배한 미국의 전화회사인 GTE는 3월 4일 동 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였으며 “당해 기업결합의 반경쟁적 측면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미국 대형 장거리 전화회사인 Sprint사도 당해 결정은 “인터넷의 장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사건 전개 중 하나를 대표하고 있다”고 하였다.

동 회사는 기업결합의 결과 탄생할 회사는 미국 인터넷 중추 통신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할 것이며, 인터넷 직접 접속의 절반 이상을 통제하고, 3개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 중 2개와 연관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시장지배적 지위는 인터넷의 성과 및 가격 설정에 대하여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WorldCom과 MCI는 3월 4일 동 위원회의 조사 연장 결정이 금년 중반으로 예정된 기업 결합 완료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98. 3. 5, Financial Times